

대전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가단1428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3. D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충남 금산군 E 전 15㎡ 외 13필지에 관하여 2015. 1. 30. F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2021. 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3,632,364원을 30,248,854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318,745원을 617,324원으로 각 경정하고, 주식회사

H에게 85,084,931원을 배당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충남 금산군 E 전 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0. 12. 22. 주식회사 H이 취득하였다가 2014. 9. 25. F가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 F는 2015. 1. 30.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 외 1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채권자 I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 12. 19.자 2017카합204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260,000,000원의 공사대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I, 피고 B이 위 대전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896호로 주식회사 H, 피고 B, I에 대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 위약금 16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0. 26.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약금 60,000,000원 및 2017. 4.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B,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 12. 26. 확정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대전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① 가압류권자 K으로부터 근저당권자 B의 배당액 전액 400,000,000원 중 115,509,847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고 소정기간 내에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0263호로 배당이의의소 제기 증명이 있고, ② 근저당권자 B의 배당액 전액 40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및추심명령(대전지법 2015타채2508),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6카단35039),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2017카합204)로 인한 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2018. 1. 8.

대전지방법원 2018금336호로 배당액 중 115,513,320원을 공탁하였다.

○ K은 대전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200263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는 각하, C에 대한 배당이의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0. 4. 6.자 2020카합14 결정은 위 2017카합204 채권가압류 결정을 위 본안패소판결 확정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 매각목적물 공탁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금336에 관하여 이 법원 G 배당절차(연계배당 L)에서 2021. 2. 5. 피고 C(대전지법 2015타채2508)에 대하여 113,632,364원을, 피고 D(서울중앙지법 2016카단35039)에 대하여 2,318,74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대구지법 2017카합204)는 2021. 2. 5.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C, D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1.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12 내지 15,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 13필지에 관하여 2015. 1. 30. F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매각목적물인 대전지방법원 2018금336호는 이 사건 부동산 외 13필지의 이 법원 J 강제경매결과 그 매각금이 피고 B를 피공탁자로 공탁된 것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여 2021. 2. 5. 배당표가 작성된 것인데, 위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H 소유의 사업부지에서 나온 것이고 주식회사 H의 실사주인 M이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줄 알면서도 F와 짜고 F에 대한 채권자 명의를 피고 B로 앞세운 것이라며, 위

배당금 중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배당일 2021. 2. 5.까지 원리금 85,084,931원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또는 주식회사 H)에게 배당해야 하고, 배당금 잔액 30,866,17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30,248,854원, 피고 D에게 617,324원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갑 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이의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주장하는 배당이의의 권원은 위 피고들이 강제집행한 피고 B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목적물이라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주장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배당이의의 자격이라 할 수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7. 12. 19.자 2017카합204 채권가압류 결정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0. 4. 6.자 2020카합14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의 배당권을 깨뜨리는 사유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자신에게 배당해야 하는 사유 또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